

환경부 공고 제2005-15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9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문개정(법률 제7292호, 2004.12.31 개정, 2006.1.1 시행)됨에 따라 유독물 취급시설 적정관리, 사고대비물질 지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OECD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유해성심사 면제항목 중 완제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등을 추

가함(안 제8조)

나.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가스상 유독물영업자에서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등 일정수량 유독물을 취급하는 영업자 등으로 변경함(안 제18조)

다.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시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물질 등의 수입허가를 면제함(안 제21조)

라.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물질 중 독성, 폭발성 및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비물질 56종을 선정함(안 제23조)

마.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9조)

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해성이 높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급제한·금지물질에 대한 허가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사고 후 영향조사 등 위임범위를 확대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보건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 02-2110-6960 또는 6964, FAX : 02-504-6068, 전자우편 : lgh03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독물, 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법 제7조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층적 자문을 위하여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관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수당)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관리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협의대상인 주요시책)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물질 사용 등에 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8조(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성심사 면제대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화학물질
 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며 사용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고유의 형상을 갖는 화학물질
 5.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전량 수출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로 누적 총량이 10톤 이하인 화학물질
 6. 중량비가 2%이하인 고분자 반응물을 제외한 반응물로 구성된 고분자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고분자화합물
 7. 저우려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
- 제9조(자료제출의 생략대상) 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하인 화학물질

2. 제8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
3. 법 제10조의 규정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개 이상의 국가(단, 유럽연합은 1개 국가로 간주한다)에서 1991년 2월 2일 이전에 유통된 해당국들의 기존화학물질
4.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거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10조(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1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관찰물질
2. 연간 100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
3. 국제기구, 국제협약 등에서 규제되거나 규제될 수 있는 화학물질

제11조(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제12조(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독성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한다.
③단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 판단 및 평가
2. 시험성적서 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 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관리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
4.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의 검토 및 조사결과의 검증
5.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목록의 제공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 및 대국민 제공
7.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심사위원의 보수 등)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

제15조(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4.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중 화학물질
6.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7.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중 화학물질

제16조(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유독물
3.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17조(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3.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를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00톤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5. 유독물을 항만·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6. 1회에 1톤 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8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독물을 연간 2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2. 유독물중 가스 또는 액체상 물질을 2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3.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연간 1천톤 이상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

4. 취급제한·금지물질중 가스 또는 액체상 물질을 100톤 이상 보관·저장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제19조(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제20조(관찰물질의 제조·수입 신고면제)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찰물질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제21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제22조(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허가 면제)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 취급제한·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살균·살충·살서제 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3.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4.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수입, 판매(수출을 제외한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5. 취급제한·금지물질(「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외한다)을 연간 30톤 이하 사용하는 자
6. 취급제한·금지물질을 항만·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7. 1회에 1톤 이하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운반하는 자
8.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9.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3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한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자체방제계획의 제출면제)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 또는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자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한 자
4. 유독물판매업 등록자중 취급시설이 없는 알선 판매업을 하는 자

제26조(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 사업장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안 사업장

3. 기타 화학물질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 사업장

제27조(환경물질)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체를 말한다) · 접착제 · 풍선류 및 도료

3. 부탄가스

제28조(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클럽에 의한 환경개선클럽으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보호기간)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신청자가 자료보호 연장신청을 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시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0조(보호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자료) ①법 제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

2. 포괄적인 사용용도

3. 제조, 저장, 운반, 사용 등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방법

5. 사고발생시 대응방법

6. 화학물질의 동질성을 드러내지 않는 물성자료

7.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약문

8. 화학물질의 환경중으로의 배출량

9.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의 각 호에 대하여 필요시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6.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 접수
9. 법 제45조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등
10.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1.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유통량·배출량조사
2.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및 변경허가
3.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4.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또는 안전진단명령
5.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6.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
7.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권리·

의무승계 신고의 수리

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10.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11.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 접수

12.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후 영향조사 등

13. 법 제45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9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등

14.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5.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6.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결과 등의 통지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서의 접수

2.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5.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7.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제32조(권한위임 등에 따른 업무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3조(보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내로 수입하는 자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유해성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제2조관련)

1. 항목별기준

가. 유독물

-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mg/kg이하인 화학물질
-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1,000mg/kg이하인 화학물질
-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이하인 화학물질
-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5)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염산이나 황산 10% 수용액 또는 폐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5% 수용액과 동등 이상인 화학물질
-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1.0mg/ℓ 이하인 화학물질
-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인 물질로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작용량이 10mg/kg/day이하이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 (8) 유전독성시험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 (9) 2종이상의 발암성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화학물질 및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화학물질
-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나. 관찰물질

- (1) 난분해성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4 내지 7인 화학물질 또는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이상인 화학물질
- (2)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과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모두 양성 또는 특정시험에서 강한 양성이거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 (3) 1종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 (4) 인체 및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며,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비고 :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를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ℓ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 $[mg/\ell = (ppm \times \text{분자량} / 24.45) \times 1/1,000]$ (상온, 상압)]에 의하여 ppm 또는 mg/ℓ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어독성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물질이 수계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수행된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독성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3) 옥탄올물분배계수·생물농축성 등을 평가함에 있어 여러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알려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를 둔다. 즉, 생물농축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옥탄올물분배계수가 높다는 이유로 관찰물질로 지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또한, 옥탄올물분배계수가 높은 경우에 불구하고 물질의 특성상 생체막에 용해되지 아니하거나 생체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은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어독성·생물농축성·유전독성·난분해성 및 옥탄올물분배계수 등에 관한 평가는 OECD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조활성관계 예측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자료에 기초할 수 있다.
- 5) 난분해성 물질의 평가는 일반 OECD 분해성 시험지침에 의하되, 광분해·가수분해 등 비생물적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경우에는 미생물적 분해에 우선할 수 있다.
- 6)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제1호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항목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불구하고 그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용도, 예상노출량,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호의 항목별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합물질·혼합물질에 대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사고대비물질(제23조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비고
1	Formaldehyde	000050 00 0	포르발리 및 포름알데히드로서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Methyl hydrazine	000060 34 4	메틸 히드라진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	Formic acid	000064 18 6	개미산
4	Methanol	000067 56 1	메탄올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	Benzene	000071 43 2	벤젠 및 이를 8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6	Methyl Chloride	000074 87 3	염화메탄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7	Methyl amine	000074 89 5	메틸아민
8	Hydrogen cyanide	000074 90 8	부기시안 화합물질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9	Vinyl chloride	000075 01 4	염화 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0	Carbon disulfide	000075 15 0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1	Ethylene oxide	000075 21 8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2	Phosgene	000075 44 5	포스케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Trimethylamine	000075 50 3	트리메틸아민
14	Propylene oxide	000075 56 9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5	Methyl ethyl ketone	000078 93 3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6	Methyl vinyl ketone	000078 94 4	메틸비닐케톤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7	Acrylic acid	000079 10 7	아크릴산
18	Methyl acrylate	000096 33 3	메틸아크릴레이트
19	Nitrobenzene	000098 95 3	나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	1 Methyl 4 nitrobenzene	000099 99 0	4-나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1	Benzyl chloride	000100 44 7	염화벤진
22	Acrolein	000107 02 8	아크론레인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3	Allyl chloride	000107 05 1	염화아릴
24	Acrylonitrile	000107 13 1	아크릴로나트릴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5	Ethylene diamine	000107 15 3	에틸렌디아민
26	Allyl alcohol	000107 18 6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7	Croton aldehyde, m cresol	000108 39 4	크레솔(Cresol ;1319 77 3)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8	Toluene	000108 88 3	톨루에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9	Phenol, liquid	000108 95 2	페놀 및 이를 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비고
30	Butylamine	000109 73 9	부틸아민
31	Triethylamine	000121 44 8	트리에틸아민
32	Ethyl acetate	000141 78 6	아세트산 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3	Sodium cyanide	000143 33 9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 황철염(Potassium ferrocyanide), 적철염(Potassium ferri 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
34	Ethylenimine	000151 56 4	에틸렌이민
35	Toluene 2,4 diisocyanate(TDI)	000584 84 9	톨루엔 2,4 디이소시아네이트
36	Carbon monoxide, gas	000630 08 0	일산화탄소, 가스
37	Acryloyl chloride	000814 68 6	아크릴오일클로로라이드
38	Zinc phosphide	001314 84 7	인화 아연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39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 23 4	메틸에틸케톤 퍼옥사이드
40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 71 9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1	Sodium	007440 23 5	나트륨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2	Hydrochloric acid(Hydrogen Chloride)	007647 01 0	염화수소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3	Hydrogen fluoride, gas	007664 39 3	플루오르화 수소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4	Ammonia	007664 41 7	암모니아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5	Sulfuric acid	007664 93 9	황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6	Nitric acid	007697 37 2	질산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7	Phosphorus trichloride	007719 12 2	삼염화인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48	Fluorine	007782 41 4	불소
49	Chlorine	007782 50 5	염소
50	Hydrogen sulfide	007783 06 4	황화수소
51	Arsine	007784 42 1	비소 또는 그 화합물과 비소화합물을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2	Chlorosulfonic acid	007790 94 5	클로로술фон산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3	Phosphine	007803 51 2	포스핀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4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 87 3	우시염화인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55	Chlorine dioxide	010049 04 4	이산화염소
56	Diborane	019287 45 7	디보란

[비고]

1. 혼합물질의 경우 비고란에 표시한 함량이상을 함유한 혼합물질을 포함한다.
 2.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아크릴레이트, 염화암립, 에틸렌 디아민, 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는 대기압(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21°C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포함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백밀폐식, 세티닐폐식 또는 크리브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의해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중 적은 수치임
-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 8호(2004.7.1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세부기준 제14,15,16조 참고

[별표 3]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제24조관련)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지정수량(kg)	
			제조·사용(연간)	보관·저장
1	Formaldehyde	000050 00 0	1,500,000	200,000
2	Methyl hydrazine	000060 34 4	300,000	10,000
3	Formic acid	000064 18 6	1,500,000	20,000
4	Methanol	000067 56 1	1,500,000	200,000
5	Benzene	000071 43 2	1,500,000	10,000
6	Methyl Chloride	000074 87 3	300,000	10,000
7	Methyl amine	000074 89 5	300,000	10,000
8	Hydrogen cyanide	000074 90 8	300,000	1,500
9	Vinyl chloride	000075 01 4	1,500,000	200,000
10	Carbon disulfide	000075 15 0	300,000	10,000
11	Ethylene oxide	000075 21 8	1,500,000	10,000
12	Phosgene	000075 44 5	75,000	750
13	Trimethylamine	000075 50 3	300,000	10,000
14	Propylene oxide	000075 56 9	1,500,000	10,000
15	Methyl ethyl ketone	000078 93 3	1,500,000	200,000
16	Methyl vinyl ketone	000078 94 4	1,500,000	200,000
17	Acrylic acid	000079 10 7	1,500,000	20,000
18	Methyl acrylate	000096 33 3	1,500,000	200,000
19	Nitrobenzene	000098 95 3	1,500,000	20,000
20	1 Methyl 4 nitrobenzene	000099 99 0	1,500,000	20,000
21	Benzyl chloride	000100 44 7	300,000	10,000
22	Acrolein	000107 02 8	300,000	10,000
23	Allyl chloride	000107 05 1	300,000	10,000
24	Acrylonitrile	000107 13 1	1,500,000	10,000
25	Ethylene diamine	000107 15 3	300,000	10,000
26	Allyl alcohol	000107 18 6	1,500,000	20,000
27	Croton aldehyde, m cresol	000108 39 4	1,500,000	20,000
28	Toluene	000108 88 3	1,500,000	200,000
29	Phenol, liquid	000108 95 2	1,500,000	20,000
30	Butylamine	000109 73 9	1,500,000	200,000
31	Triethylamine	000121 44 8	300,000	10,000
32	Ethyl acetate	000141 78 6	1,500,000	20,000
33	Sodium cyanide	000143 33 9	300,000	10,000
34	Ethylenimine	000151 56 4	1,500,000	20,000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CAS 번호	지정수량(kg)	
			제조·사용(연간)	보관·저장
35	Toluene 2,4 diisocyanate(TDI)	000584 84 9	1,500,000	20,000
36	Carbon monoxide, gas	000630 08 0	300,000	10,000
37	Acryloyl chloride	000814 68 6	750,000	20,000
38	Zinc phosphide	001314 84 7	300,000	10,000
39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001338 23 4	750,000	10,000
40	Isophorone diisocyanate	004098 71 9	300,000	10,000
41	Sodium	007440 23 5	30,000	1,000
42	Hydrochloric acid(Hydrogen Chloride)	007647 01 0	1,500,000	20,000
43	Hydrogen fluoride, gas	007664 39 3	150,000	1,000
44	Ammonia	007664 41 7	1,500,000	20,000
45	Sulfuric acid	007664 93 9	1,500,000	20,000
46	Nitric acid	007697 37 2	2,250,000	30,000
47	Phosphorus trichloride	007719 12 2	300,000	10,000
48	Fluorine	007782 41 4	150,000	1,000
49	Chlorine	007782 50 5	450,000	10,000
50	Hydrogen sulfide	007783 06 4	150,000	1,000
51	Arsine	007784 42 1	15,000	500
52	Chlorosulfonic acid	007790 94 5	300,000	10,000
53	Phosphine	007803 51 2	15,000	500
54	Phosphorus oxychloride	010025 87 3	750,000	20,000
55	Chlorine dioxide	010049 04 4	150,000	20,000
56	Diborane	019287 45 7	75,000	750

[비고]

- 제조·사용량이라 함은 제조·사용 등 설비에 있어서 사고대비물질을 일년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함
- 보관·저장량이라 함은 보관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에서 최대로 보관·저장할 수 있는 수량을 말함
- 연간 제조·사용 지정수량 이상 또는 보관·저장 지정수량 이상으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수립 대상임